



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 지 환 경 위 원 회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희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전혜연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6. 4. 17.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공 선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희공간 이용 촉진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7일 전해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4월 7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유희공간의 발굴·이용·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나.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
-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라. 지원사업 추진 등 (안 제6조)
- 마. 사업자 선정 등, 임대, 협력체제 구축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 다. 관련부서 : 기후에너지과
- 라. 입법예고 : 2026. 4. 7. ~ 2026. 4. 13.(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동 안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희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유희공간의 체계적인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공공유희공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공공유희공간 정보 제공 및 생산설비 설치비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사업자 선정 기준, 공유재산 임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또한 관계 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공간 및 시설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임.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차원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아울러 상위법 및 관련 조례와의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3.11.14>

④ 공유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0. 5. 1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6.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의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희공간 이용 촉진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공공유희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공공유희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책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유희공간의 발굴 및 확보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의 규모 및 지출의 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기후에너지과장 김운탁